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- 가. 발 의 자: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653호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7월 1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4일

2. 제안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4조제2항제2호).
- 나.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(안 제14조제7항 신설).
- 다. ‘행상 또는 노점’을 ‘거리가게’로 함 (안 제17조제1항제4호).

4. 참고 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- 금번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은 크게 7개 평가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, 동 조례에는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,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, 반환권 제약 등 3개 개정 권고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.

[첨부 1]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내용 및 목록. 참고

-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: ‘거리가게’는 ‘행상/노점상’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순화어임 (안 제17조제1항제4호)
-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.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(이용)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(안 제14조제2항제2호)
- 반환권 제약: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, 관람권(이용권)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 보장 (안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언어에 대한 수정, 장애인 문화권 확보, 반환권 확보 등 대안용어 사용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2)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대한 의견

- 법령 용어와 표현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하므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.
-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“자(者)”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 “사람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음.
(제14조제1항, 제2항제6호)
- 그러나 「법령입안 심사기준」에 의하면 ‘자(者)’가 ‘사람’을 의미할 때에는 ‘사람’으로 쓰고, ‘사람’ 뿐 만 아니라 ‘법인’이나 ‘단체’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‘자’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음¹⁾.
- 한강공원의 시설물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,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, 이용자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‘자’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임.

1) 「법령입안 심사기준」 2017. 722쪽

〈 붙임 2 〉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

□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

연번	인권영향평가			권고사유		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		
총 계				96		
1	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(9개 용어)	계		50		
		행상/노점상	→	거리가게	5	‘거리가게’는 ‘행상/노점상’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(2013)
		미혼	→	비혼	1	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‘하지 않은 것’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
		부모	→	보호자	1	부모 외의 대상(조부모 등)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
		소외계층·우범지역	→	취약계층·취약지역	14	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
		저출산	→	저출생	11	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
		유모차	→	유아차	4	유모차는 ‘어미 ㄹ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: ‘유아’ 중심으로 표현
		자매결연	→	상호결연 (sister city)	12	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※ 한국법제연구원(2015)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
		장애등급	→	장애정도	1	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(장애인복지법)
		결손가정·결손가족	→	소년소녀가정·한부모가정 등	1	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,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(2019)
2	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	계		5		
		학생	→	청소년/시민	3	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
		주부	→	여성	1	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‘주부’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,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
		특정계층 지칭			1	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※ 주부, 학생 등 → 고용계약이 없는 자
3	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			8	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입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미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	
4	장애인의 문화권 제약			4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(이용)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	
5	반환권 제약			8	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, 관람권(이용권)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	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		20	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	
7	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			1	‘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,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 삭제 필요	